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63
----------	-----

2025. 3. 2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2025년 3월 13일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차별이나 편견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통합교육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5호)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령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더 넓고, 더 두터운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 장애 학생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고 '권리'로서의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조 반영, ▲보편적 학습설계의 가치를 교육계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95,420	98,147	103,695	109,703	115,610
충북 특수교육대상자 수	4,136	4,244	4,492	4,690	4,956

[자료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는 이 같은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2022년

12월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지향하며,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과 장애인·비장애인 교육격차 완화 및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¹¹⁾ 하였음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의 주요 과제로는 ▲통합 교육 지원 제도개선, ▲장애학생 교육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일반교원과 특수교원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3년 4월 ‘충청북도 교육청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과 정별 특수학교 신설 정책연구를 추진해 다양한 특수학교 모델 확산, ▲유치원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특수학급 21개 학급을 신증설, ▲내실 있는 통합교육 운영을 위해 중복형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통합학급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 교사 배치 확대,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교육부의 특수교육 정책을 반영 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통합교육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안정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과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1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제6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2023~2027) 2022년 12월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 이는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목적에 담은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2조에는 “통합교육”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충북에는 308개 학교에 708개 통합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742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첨부자료 1)
- 안 제4조에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통합교육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5년마다 수립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통합교육 정책과 세부 추진 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는 학교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일반학생과 함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을 반영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 교육 발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들이 법리적 측면에서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 바,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통합교육이 확대되어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024년도 시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현황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일반직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장애 영아 수	교원 수	
전체	195	5,582	30,027	10,441	1,822	9,512	13,931	65,966	14,904	8,352	18,255	19,254	363	1,739	115,610
서울	32	859	4,531	1,563	367	951	1,630	7,646	1,722	1,046	2,244	2,319	50	114	14,546
부산	15	377	2,064	709	137	535	673	3,465	706	634	1,761	1,906	-	88	7,435
대구	11	343	2,027	657	81	347	490	2,343	508	514	1,391	1,463	9	108	5,842
인천	10	357	1,988	613	54	517	833	4,464	865	571	1,574	1,695	14	107	8,161
광주	6	258	1,307	461	39	245	328	1,604	329	236	532	550	-	46	3,461
대전	6	196	1,115	374	52	283	405	1,977	427	237	479	491	13	56	3,596
울산	4	148	795	282	36	227	351	1,769	357	205	477	488	3	43	3,055
세종	2	55	279	92	14	131	160	726	157	86	167	174	-	19	1,179
경기	38	952	5,489	2,128	370	2,413	3,833	18,767	4,534	1,805	4,065	4,236	89	375	28,581
강원	9	203	919	350	76	378	419	1,836	419	292	471	490	4	71	3,249
충북	11	301	1,462	502	88	443	619	2,730	624	308	704	742	22	103	4,956
충남	10	288	1,441	504	78	565	860	3,920	864	333	492	509	5	105	5,875
전북	10	224	1,190	401	80	454	558	2,421	563	457	871	935	2	89	4,548
전남	9	231	1,240	441	106	573	757	2,957	760	225	276	291	-	75	4,488
경북	8	263	1,536	482	127	587	763	3,404	783	592	1,172	1,274	27	136	6,241
경남	11	415	2,049	708	91	742	1,074	4,860	1,075	646	1,174	1,248	5	157	8,162
제주	3	112	595	194	26	121	178	1,077	211	165	405	443	120	47	2,235

[자료출처: 교육부, 2024년 특수교육 통계(2024. 4. 1. 기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려한 특수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통합된 특수교육환경**”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교육**”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을 “**운영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① ~ ③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등) ① -----

--- 운영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2024. 2. 27.>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

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2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

제공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 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 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